

검사복무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

검사복무평정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검찰청법」 제35조의2”를 “「공소청법」 제43조”로 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「검찰청법」”을 “「공소청법」”으로, “제35조의2”를 “제43조”로, “제28조에 따른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(이하 “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”라 한다)”를 “제29조에 따른 공소청검사등(이하 “공소청검사등”라 한다)”한다.

제3조제1항제3호 중 “검찰청”을 모두 “공소청”으로, 제2항 중 “지방검찰청 검사장”을 “지방공소청장”으로, “지방검찰청 지청”을 “지방공소청 지청”으로 한다.

제4조에 “6. 사건 처분의 적정성”를 추가한다.

제5조의2제1항·제2항 중 “지방검찰청”을 모두 “지방공소청”으로 한다.

제6조의2제1항 중 “고검검사급(고등검찰청의 부장검사 및 검사, 지방검찰청의 차장검사 및 부장검사, 지방검찰청 지청의 지청장·차장검사 및 부장검사, 법무부 또는 대검찰청의 기획관·정책관·담당관·대변인·과장에 임용된 검사 및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의 검사를 말한다)”를 모두 “광역공소청 검사급 검사(광역공소청의 부장검사 및 검사, 지방

공소청의 차장검사 및 부장검사, 지방공소청 지청의 지청장·차장검사 및 부장검사, 법무부 또는 공소청의 기획관·정책관·담당관·대변인·과장에 임용된 검사 및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검사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의 검사를 말한다)”로, 제2항제1호 중 “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”를 “공소청검사등”으로, 제2항제3호 중 “검찰청”을 “공소청”으로 한다.

제8조의2제1항제1호 중 “제39조제5항”을 “제47조제5항”으로 한다.

검사복무평정규칙 일부개정안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 <u>검찰청법</u> 」 제35조의2에 따라 검사의 근무성적과 자질 평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「 <u>공소청법</u> 」 제43조 ----- ----- -----.
제2조(평정대상) ① 「 <u>검찰청법</u> 」 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5조의2에 따른 근무성적과 자질 평정 (이하 “복무평정”이라 한다)은 <u>법 제28조에 따른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(이하 “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”라 한다)</u> 를 제외한 검사를 대상으로 한다.	제2조(평정대상) ① 「 <u>공소청법</u> 」 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3조-- ----- ----- <u>법 제29조에 따른 공소청검사등</u> (이하 “ <u>공소청검사등</u> ”라 한다) ----- -----.
제3조(평정자)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급자로 하여금 검사에 대한 복무평정을 하게 할 수 있다. 1. ~ 2. (생략) 3. 직무대리 등의 사유로 소속되어 있는 <u>검찰청</u> 외에서 근무하는 검사에 대하여는 직무대리 등으로 실제로 근무하는 <u>검찰청</u> 소속 검사로서 해당 검사에 대한 업무처리를 지도·감독하는	제3조(평정자) ① (현행과 같음) 1. ~ 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 ----- <u>공소청</u> ----- ----- ----- <u>공소청</u> ----- ----- -----

상급자. 다만, 직무대리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서 평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4조(평정 항목) 평정 항목은 검사의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한다.

1. 인권옹호 · 청렴성
2. 적시성 · 추진력
3. 합리성 · 균형감 · 성실성
4. 친절 · 소통 · 인화 · 자기절제
5. 리더십 · 조직운영

제5조의2(평정회의) ① 검사에 대한 복무평정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 지방검찰청 및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차장검사를 두는 지방검찰청 지청에서는 복무평정자가 복무평정을 하기 전에 평정회의를 열어야 한다.

② 평정회의에는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지청의 차장검사와 부장검사가 참여하여 전체

공소청

제4조(평정 항목) (현행과 같음)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6. 사건 처분의 적정성

제5조의2(평정회의) ① -----

-----지방공소청

-----지방공소청-----

② -----지방공소청

----지방공소청-----

복무평정 대상 검사에 대해서
제4조 각 호에 따른 복무평정에
관한 의견을 수렴한다.

③·④ (생략)

제6조의2(다면평가의 실시) ① 법
무부장관은 고검검사급 검사(고
등검찰청의 부장검사 및 검사,
지방검찰청의 차장검사 및 부장
검사, 지방검찰청 지청의 지청
장·차장검사 및 부장검사, 법
무부 또는 대검찰청의 기획관·
정책관·담당관·대변인·과장
에 임용된 검사 및 법 제35조제
1항에 따른 검찰인사위원회의
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지정
하는 직위의 검사를 말한다)에
대하여 「공무원 성과평가 등에
관한 규정」 제28조에 따른 다
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다면평가의 평
가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
한다.

1.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
2. (생략)
3. 다면평가 대상 검사와 같은
검찰청·지청 또는 같은 부서에서

-----.

③·④ (현행과 같음)

제6조의2(다면평가의 실시) ①--
-----광역공소청 검사급
검사(광역공소청의 부장검사 및
검사, 지방공소청의 차장검사
및 부장검사, 지방공소청 지청의
지청장·차장검사 및 부장검사,
법무부 또는 공소청의 기획관·
정책관·담당관·대변인·과장에
임용된 검사 및 법 제42조제1항에
따른 검사인사위원회의 심의를
거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직
위의 검사를 말한다)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1. 공소청검사등
2. (현행과 같음)
3. -----
공소청-----

근무하였거나 근무 중인 검사 제8조의2(복무평정 결과 요지의 고지 등)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무평정 결과의 요지 를 평정 대상 검사 본인에게 알 려줄 수 있다. 1. 검사가 법 <u>제39조제5항</u>에 따 라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출석 하도록 통보받은 경우	----- 제8조의2(복무평정 결과 요지의 고지 등) (현행과 같음) 1. -----<u>제47조제5항</u>----- ----- -----
---	--